

“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등록번호	사회복지과-1657
등록일자	2016. 1. 12.
결재일자	2016. 1. 12.
공개구분	부분공개 (5)

주무관	생활보장팀장	사회복지과장	복지문화국장		
정승은	정재하	대정재하	01/12 김효길		
협조자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계획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12.30. 일부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2015.12.31. 일부개정)
-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16년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16년도 주거급여 사업 안내(국토교통부)
- 2016년 국민기초생활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교육부)

추진기간 : 2016. 1. 1. ~ 12. 31.

추진방향

- 소득·재산조사, 자격요건에 대한 조사 결과에 대한 보장 결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적정급여 지급 및 보장비용 징수·반환명령

주요변경 내용

- 기준중위소득 전년 대비 4% 인상에 따른 급여별 보장성 강화
 - 생계급여 7.7%(4인가구 기준 9만원 인상), 주거급여 2.4%, 교육급여 1.4% 인상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8% → 29%로 변경
- 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2015.12.31.) 사항 반영
 - 자활근로소득(자활장려금) 폐지, 기타 산정되는 (중여·처분)재산 기준 개선

업무흐름



소요예산 : 39,979,351천 원

※ 생계·주거·교육급여 : 국비60%, 시비60%, 구비12% / 의료급여 : 국비50%, 시비50%

강 남 구
(사 회 복 지 과)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p>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4.12.30. 일부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15.12.31. 일부개정) •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16년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16년도 주거급여 사업 안내(국토교통부) • 2016년 국민기초생활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교육부) 																											
추진 경위	<p>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경위 : 사업기간 만료에 따른 재계획 																											
예산 사항	<p>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거 및 기준을 검토한 결과 적정함 																											
수혜자 및 범위	<p>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분야별 검토사항 (계속 :) (신규 :)	<p>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p> <table border="0"> <tr><td>① 관련부서 협조</td><td>-----</td><td>()</td></tr> <tr><td>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td><td>-----</td><td>()</td></tr> <tr><td>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td><td>-----</td><td>()</td></tr> <tr><td>④ 미래행정 수요예측</td><td>-----</td><td>()</td></tr> <tr><td>⑤ 시장조사</td><td>-----</td><td>()</td></tr> <tr><td>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td><td>-----</td><td>()</td></tr> <tr><td>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td><td>-----</td><td>()</td></tr> <tr><td>⑧ 행사관련 의견 및 선거법</td><td>-----</td><td>()</td></tr> <tr><td>⑨ 투용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td><td>-----</td><td>()</td></tr> </table> <p>•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p>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견 및 선거법	-----	()	⑨ 투용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① 관련부서 협조	-----	()																										
② 이해관계인 및 예상되는 민원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⑤ 시장조사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⑧ 행사관련 의견 및 선거법	-----	()																										
⑨ 투용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타 기관 사례	<p>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전국 시행 																											
전문가문	<p>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항 없음 																											

목 차

I	추진개요	4
II	세부추진계획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결정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계급여 지급 ○ 의료급여 지급 ○ 주거급여 지급 ○ 교육급여 지급 ○ 해산·장제급여 지급 ■ 수급자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무능력(미약)자의 급여 관리 ○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 명령 ○ 복지정보 신속 알림망 시행 	
III	행정사항	22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 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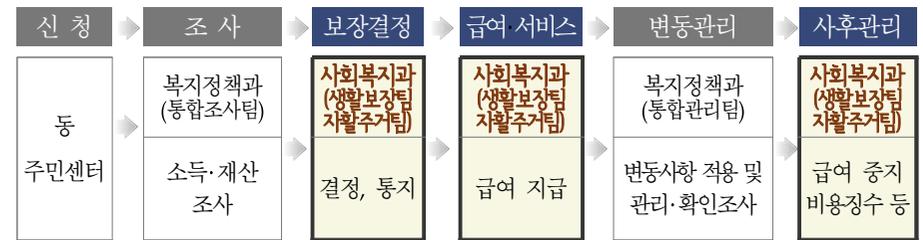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소득·재산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결과에 대한 개별 급여 실시 여부와 급여 내용을 결정하고, 적정 급여 지급과 신속한 정보전달 및 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비용의 징수 등을 통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I 추진개요

-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2014.12.30. 일부개정) 및 같은법 시행령(2015.12.31. 일부개정)
 -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16년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 2016년 주거급여 사업 안내(국토교통부)
 -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교육부)

- 추진방향**
- 소득·재산조사 및 자격요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른 보장 결정
 - 기초수급자에 대한 개별 적정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지급
 - 보장비용 징수기준에 따라 보장비용의 징수 및 반환결정, 이의신청 처리
 -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데이터를 활용한 복지정보 신속 전달

II 업무흐름



2016년도 기초생활보장사업 주요 변경 내용

○ 기준중위소득 전년 대비 4% 인상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5년	1,562,337	2,660,196	3,441,364	4,222,533	5,003,702	5,784,870	6,566,039
2016년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8% → 29% 변경

- ▶ 4인가구 기준 '15년 1,182천원 '16년 1,273천원으로 7.7%(9만원) 증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2015.12.31. 일부개정)

- ▶ 자활근로소득공제(자활장려금) 폐지 : 국세청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으로 전환
- ▶ 기타 산정되는 재산기준 개선 : '11.12.31. 이전에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은 기타 산정되는 재산으로 산정하지 않음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

(15. 12월말 현재, 단위 : 가구/명)

계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18,937	31,743	5,646	9,558	5,991	10,429	6,057	9,915	1,243	1,841

소요 예산 : 39,979,351천원

○ 국시비 보조사업 : 국비(60%), 시비(28%), 구비(12%)

※의료급여 특별회계 : 국비(50%), 시비(50%)

○ 급여별 예산액

(단위 : 천원)

구분	계	국비	시비	구비
계	39,979,351	23,829,061	11,254,660	4,895,630
생계급여	30,230,655	18,123,768	8,457,759	3,649,128
의료급여	504,121	252,061	252,060	-
주거급여	8,938,420	5,363,052	2,502,757	1,072,611
교육급여	155,855	-	-	155,855
해산·장제급여	150,300	90,180	42,084	18,036

※ 교육급여 : '15년 6월 30일까지는 구청에서 직접 지급하였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15년 7월 1일부터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교육급여 소관 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교육청에서 교육급여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관계로 교육부와 서울시는 교육청으로 국비와 시비를 교부하게 되어 구비(분담금 12%)만 예산 편성

II

세부 추진 계획

1. 국민기초생활보장 보장결정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자의 소득·재산 및 기타 자격요건 조사·확인 후, 선정기준 적합여부를 결정(책정, 제외, 중지 등) 하여 적정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함

■ 사업 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

-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별 선정기준 이하인 자
- ▶ 2016년 기준중위소득 및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2016년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29%이하)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0%이하)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743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43%이하)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936,333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3,414,340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와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세부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가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 기본재산액 : 대도시(5,400만원), 중소도시(3,400만원), 농어촌(2,9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 월1.04%, 일반재산(주거용재산 제외) 월4.17%, 금융재산 월6.26%, 자동차 월100%
부양의무자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부양의무 배제) • 부양능력 판정 - 부양능력 없음(수급자 선정), 미약(선정 및 부양비 부과), 있음(수급자 선정 제외)

○ 2015년 12월말 보장결정 현황

(단위: 가구/명)

계		책정		중지		부적합		유형변경		비고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6,141	11,693	1,938	3,560	1,251	1,925	2,504	5,244	448	964	교육급여 보장결정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장결정 및 통지

- ▶ 보장결정은 생계, 의료급여는 생활보장팀에서 주거급여는 자활주거팀에서 각각 결정
- ▶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보장결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실시
- ▶ 보장결정 통지는 수급권자가 신청한 급여 중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 업무를 담당하는 팀에서 발송

■ 기대효과

- 소득인정액이 조금 증가해도 모든 급여가 중지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하여 수급자의 안정적인 자립을 유도

2.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실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급여 등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함

생계급여 지원

■ 지급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29%) 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수준

-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text{생계급여액} = \text{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text{가구의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29%

[2016년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 및 선정기준]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생계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 (기준중위소득의 29%이하)	471,201	802,315	1,037,916	1,273,516	1,509,116	1,744,717	1,980,317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와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지원방법

- 지급단위 : 가구를 단위로 산정 지급
- 급여일
 -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 ▶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
- 지급방법 : 행복e음 급여자료 생성에 의해 매월 20일 계좌이체



■ 지원기준

- 신규 수급자에 대한 지급기준 : 급여 신청일이 포함된 달에 산정된 급여 전액 지급
- 거주지 변경시의 지급기준

- ▶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신거주지, 16일 이후일 경우 구거주지에서 지급
- 가구의 구성원에서 제외된 자에 대한 지급기준 : 제외된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급여중지자에 대한 지급기준 : 급여중지가 결정된 달의 급여는 전액을 지급
- 가구원 출생 시 지급기준 : 출생일 기준으로 가구원 추가하여 급여 지급
- 수급자 사망 시 지급기준 :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급여는 전액 지급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동안의 지급기준
 - ▶ 원칙적으로 생계급여 전액을 지급
 - ▶ 다만, 3개월 중 30일 이상의 기간 동안 입원중인 수급자는 30일 초과 입원 일수에 대하여 장기 입원하여 지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금액을 공제대상 월 급여에서 공제하되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보전한 후 급여지급

기대효과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의료급여 지원

지급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 소득 40%)이하인 자

[2016년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6,828,680
의료급여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의료급여수급권자 현황

(2015. 12월말, 단위: 명)

총계	1종(근로능력 가구 및 타법적용자)			2종(근로능력가구)
	기초수급자	시설수급자	타법	기초수급자
11,382	5,913	659	953	3,857

수급권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

구분	구분	1차(의원)	2차 (병원, 종합병원)	3차 (지정병원)	약국	PET 등
		1종	입원	없음	없음	없음
	외래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2종	입원	10%	10%	10%	없음	10%
	외래	1,000원	15%	15%	500원	15%

사업별 지원내역

- 장애인 보장구 지원
 - ▶ 지원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지원금액 : 유형별기준액, 고시금액 및 실구입금액 중 최저금액에 해당하는 금액
- 본인부담금 지원
 - ▶ 본인부담보상금 및 상한제(초과금) 지급
 - 보상금 1종 : 매 30일간 2만원 초과분에 대해 50% 지급
 - 보상금 2종 : 매 30일간 20만원 초과분에 대해 50% 지급
 - 초과금 1종 : 매 30일간 5만원 초과시 그 초과금액 전액 지급
 - 초과금 2종 : 매 6개월간 60만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금액 전액 지급
- 입양아동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
 - ▶ 지급대상 :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 ▶ 적용방식
 - 사전지원 :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면제
 - 사후지원 : 의료기관 이용시 본인부담금 선납부 후 추후 환급(분기별)

○ 요양비 지급

▶ 가정산소치료요양비

- 지급기준 : 의사의 산소치료처방전에 의하여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산소치료서비스를 제공받은 경우(임차한 경우만 가능)

- 지급금액 : 월120,000원

▶ 자동복막투석요양비

- 지급기준 :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여 자동복막투석시 사용되는 복막 관류액 또는 소모성재료(카세트 및 배액백)를 의약품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공급업체로 등록된 업체에 한함)

- 지급금액 : 1일 5,640원

▶ 당뇨병환자요양비

- 지급기준 : 당뇨병환자가 혈당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등을 의약품/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가도뇨 판매업소로 등록된 업체에 한함)

- 지급방법

구 분	개 선	
	인슐린 투여	미투여
1형 당뇨병	2,500원	-
2형 당뇨병	성인	900원
	소아·청소년	2,500원
임신 당뇨병	2,500원	1,300원

▶ 임신·출산 진료 요양비 잔액지급

- 지급대상 :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기간 전 의료급여 상실된 자
- 지원금액 : 지원기간 동안 쓰고 남은 총 금액(건강보험공단 통보)

○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에 따른 잔액 지급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 지급

- 대상자 :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이 남은 수급권자(단, 2000원 미만 제외)
- 지급시기 : 국민건강보험으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지급

○ 본인부담환급금

▶ 지급기준 : 본인 부담진료비중 1,000원이상 환급액이 발생된 경우
▶ 지급절차 : 매월 건강보험공단 통보→ 대상자 조회 → 계좌입금

○ 의료급여 대지급금 지원

▶ 지급대상 : 2종 수급권자가 입원하여 발생한 비용 중 본인부담금이 2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지급절차 : 대지급신청서 제출 후 이를 심사하여 대지급 실시

■ 대상자관리

○ 자격변동자 수시관리(전·출입, 취득·중지, 유형변경 등)

■ 기대효과

○ 저소득계층의 의료비 부담완화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도모

주거급여 지원

■ 지급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 소득 43%)이하인 자

■ 지원내용

○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한 급여 지급
▶ 임차가구 : 최저주거기준을 고려하여 가구원수별·지역별 산정한 기준 임차료를 상한으로 임차 급여 지급
▶ 자가가구 : 주택 노후도 등을 감안하여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 비용을 상한으로 수선유지 급여 지급

■ 지원수준 및 지급 방법

○ 임차가구 : 기준 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실제 임차료)와 기준 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

-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자격변동 등의 사유나 보장결정일이 급여생성 기준일인 15일 이후인 경우에는 매월 말일 추가지급
- ▶ 행복e음 급여자료생성에 의해 매월20일 지정된 계좌에 입금
 -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 계좌로 입금하나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 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
- ▶ 수급자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변경되는 경우
 -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 임대차계약의 변경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종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지급
- 자가가구 : 수급자의 가구 규모, 소득인정액, 수선유지비 소요액, 주택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지급

※주택 노후도 상태에 따라 경보수(350만원,3년), 중보수(650만원,5년), 대보수(950만원, 7년)로 구분

[201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 수준]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의 43%이하)	698,677	1,189,640	1,538,978	1,888,317	2,237,656	2,586,994	2,823,397
기준임대료	195,000	225,000	266,000	307,000	317,000	369,000	369,000

기대효과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

이행기 보전액

이행기 보전액이란

- 수급자의 다른 조건은 동일하나 맞춤형급여로의 제도개편 때문에 **급여 감소**

한 경우 그 감소한 금액을 보장함으로써, 제도개편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보장성 감소를 방지하고자 개편 과도기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보전액임

- 권리로 보장하는 급여가 아니며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아님

지급대상

- 2015년 6월 현금급여(일반생계급여, 주거급여)가 지급된 수급자로서, 맞춤형 급여 개편으로 2015년 7월 급여가 감소되는 수급자

지급시기 : 매월 20일 정기지급(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

이행기 보전액 운영 방법

- 이행기 보전액 집행 담당 및 지출 재원

구분	생계급여 감소	주거급여 감소	집행담당	집행재원
이행기보전액 발생 원인	○	×	생계급여담당	생계급여
	×	○	주거급여담당	주거급여
	○	○	주거급여담당	주거급여

- 이행기 보전액의 차감

▶ 차감사유 및 차감시기

- 최저보장 수준 인상 시 : 매년 1월 급여 생성 시 최저보장수준 인상분은 이행기 보전액에서 자동차감
- 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 반영 시 : 매년 상·하반기 2회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결과 소득인정액이 증가한 경우 증가분만큼 자동차감 (확인조사 본 정비 달부터)

교육급여 지원

지급대상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 16조 각 호의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자 및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자녀

[2016년 교육급여 선정기준]

(단위: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624,831	2,766,603	3,579,019	4,391,434	5,203,849	6,016,265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50%이하)	812,415	1,383,302	1,789,509	2,195,717	2,601,925	3,008,132

■ 지원종류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지원액

(단위:원)

구분	급여종류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입학금/수업료
초등학생		39,200	-	-	-
중학생		39,200	53,300	-	-
고등학생		-	53,300	131,300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액
지급횟수		연1회	26,650원씩 연2회	연1회	입학금은 신입생 입학 시 1회 수업료는 분기별 지급

■ 지원절차



■ 예산 부담 및 정산

- 지원조건 : 국비60%, 시비28%, 구비12%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3조의2(교육급여 보장비용 부담의 특례)

기준	예산부담주체	
	고교 입학금·수업료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대
기준중위소득 40%이상 ~ 50% 이하	시도교육청	
기준중위소득 40%미만	부양의무자 있음	국가, 시도, 시군구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미약 (의료급여 수급자 기준)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늘어난 입학금·수업료는 시도교육청이 부담
 - ※ 고교 입학금, 수업료 예산부담주체 구별 방법 : 교육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해당 수급자가 의료급여수급자가 아닌 경우 교육청이 부담
-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부담비율에 따라 교육급여 예산 반영

■ 기대효과

- 소득 산정 시 부양의무자 기준폐지로 보다 더 많은 분들이 적정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아 자립능력을 배양함과 동시에 빈곤의 세대 전승 차단

해산 · 장제급여 지원

■ 지급대상

- 해산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출산예정 포함)한 경우
- 장제급여 :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장제보호)에 의한 의사자

■ 지원내용

- 해산급여 : 조산(助産) 및 분만 전과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
- 장제급여 :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수준

- 해산급여 : 1인당 600천원 지급(쌍둥이 출산시 1,200천원 지급)
- 장제급여 : 1구당 750천원 지급

■ 지원방법

- 해산급여 : 수급자나 그 세대주 또는 세대주에 준하는 자에게 수급금품을 지급
- 장제급여 :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
- 지급 신청일로부터 4일 이내 처리, 7일 이내에 지급

■ 기대효과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출산 지원과 장제비 부담 경감

3.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 관리

의사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관리 사항을 확인하고 부정수급 및 부양의무 불이행자에게 보장비용을 징수하여 복지재정 누수를 적기에 방지하고자 함

의사무능력(미약)자 급여관리 모니터링

■ 관리대상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수급자(단독가구 포함)들로만 구성된 가구
- 정신의료기관 6개월 이상 장기입원자(정신분열병, 분열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 정신지체로 진단받은 자)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장애 및 지적·자폐성 장애(1~3급), 치매노인, 18세미만 아동
- 단독가구·장애상태·의사능력 정도, 생활실태 등 개인별 차이를 감안하여 읍·면·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본인 스스로 관리사용 능력이 있거나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관리자로 지정 되거나 3촌 이내 친족 및 급여관리자로 지정 된 사람이 아동복지법 제15조에 따른 위탁가정의 위탁부모로 급여의 악용의 우려가 없다고 보장기관이 인정한 경우

급여 관리 점검에서 제외

■ 급여관리자 지정

- 우선적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자 중 급여관리와 사용을 지원하기 적합한 자를 급여관리자로 지정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급여관리자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사회복지기관 재가복지담당자 등 수급자 지원이 용이한 지역인사로 지정
- 개인운영 시설의 경우 시설장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하고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의 경우 의료기관의 장을 급여관리자로 지정

■ 급여관리 방법 및 상황 확인

- 관리방법 : 급여 관리자는 급여를 지출한 경우 그 내역을 기록(영수증 관리)
- 관리상황 확인
 - ▶ 동주민센터 : 급여관리자 지정 후 반기별 급여점검 및 행복e음 결과 등록 - 급여관리 점검내용 : 실제 급여수령여부(급여점검표 작성 보관), 지정동의서, 급여 지출내역 및 증빙서류(영수증) 관리
 - ▶ 시군구 : 반기별 동 급여관리 점검, 병원입원자에 대한 급여관리자 지정·승인 등
- ※ 관외지역 입원자는 병원 소재지 보장기관과 협의하여 급여관리 위탁

■ 기대효과

- 의사무능력(미약)수급자의 수급권 부당침해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 및 차단

보장비용의 징수

■ 부정수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부정수급자 확인에 따른 조치 및 사전 통지
 - ▶ 부정수급의 확인은 직접적으로 급여를 지급한 보장기관이 행함
 - ▶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복지정책과(통합관리팀) 조사 결과에 따라 대상자에 대한 처분 사전통지
 - ▶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자 등록·관리, 급여중지, 보장

비용 징수와 고발조치 여부 결정

※ 고발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 유선질의 내용(붙임) 준용

- ▶ 부정수급의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보장비용 징수 결정

▶ 보장비용 징수금액

- 징수금액은 보장기관이 지급한 급여(급여실시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 부정수급자가 2인 이상의 경우 징수금액을 부정수급자의 수로 나누어 징수

▶ 징수대상자 관리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
- 생계, 의료급여 및 '15년 6월 이전의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는 생활보장팀에서,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자활주거팀에서 수행하고 교육급여의 경우 통합관리팀(복지정책과)에서 교육청으로 통보

○ 보장비용의 징수절차

- ▶ 보장비용 납부통지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
- ▶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통지서 및 고지서(등기우편 등)로 송부
- ▶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 분할 징수

○ 징수금액의 처리

- ▶ 징수 당해연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처리
- ▶ 과년도 급여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처리

■ 부양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보장비용 징수

○ 부양의무 불이행자의 범위

-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있음에도 부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 ▶ 부양능력이 미약한 부양의무자가 수급(권)자의 양을 거부·기피함에 따라 보장기관에서 부양비를 산정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에게 급여를 실시한 경우

○ 보장비용 징수 결정

- ▶ 보장비용 징수결정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장비용

징수대상, 징수여부, 징수금액, 징수주기 결정함

▶ 보장비용 징수금액

- 징수금액 : 생계,주거,해산·장제,자활급여에 대하여 부양능력 있는 자는 급여로 지급한 금액의 전부, 부양능력 미약자는 부양비에 해당하는 금액
- 대상기간 : 부양능력 있음 또는 미약하다고 확인되는 다음 달 부터 징수

○ 징수대상자 관리

- ▶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
- ▶ 생계, '15년 6월 이전의 보장비용 징수대상자는 생활보장팀에서, 주거급여 보장비용 징수대상자에 대한 관리는 자활주거팀에서 수행

○ 보장비용의 징수 절차

- ▶ 보장비용 납부통지 :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통지
- ▶ 보장비용·부당이득 징수통지서 및 고지서(등기우편 등)로 송부
- ▶ 분할신청이 있는 경우 징수대상자의 생활실태 등을 감안 분할 징수

○ 징수금액의 처리

- ▶ 징수 당해연도 급여에 대한 징수금은 세출예산과목으로 반납(여입)처리
- ▶ 과년도 급여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처리

■ 기대효과

- 부적정 지급 급여 징수를 통한 복지재원 누수 방지

■ 반환 명령

■ 반환의 요건 및 대상

- 급여의 변경 또는 급여의 정지·중지에 따라 수급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급품 중 과잉지급분이 발생한 경우

■ 반환의 감면(감액 또는 면제)

-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반환을 감액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
 - ▶ 수급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급여내용, 지역실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부도 등으로 사실상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 반환대상자 관리

○ 반환대상자를 행복e음(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 관리

■ 기대효과

○ 과잉지급 급여에 대한 반환 및 기초수급자의 생활실태, 가구특성 등에 대한 확인을 통해 탄력적 운영 가능

복지정보 신속알림 정보망 운영

■ 사업목적

○ 신설·변경되는 복지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찾아가는 복지행정 구현

■ 지원내용

○ 수시(정기) 필요한 문자 메시지 발송

■ 운영기간

○ 2016. 1월~12월

■ 운영방법



■ 활용방안

- 매년 제도·급여 변경 사항 안내
-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안내
- 언론보도 특이사항 안내 등

■ 기대효과

○ 찾아가는 복지행정의 체감도 극대화



행정사항

■ 동주민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 및 관련 지원제도 안내

○ 의사무능력(미약)수급자 급여 관리 실태 반기별 확인

■ 사회복지과

○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20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 의료급여사업안내(보건복지부), 2016년도 주거급여 사업 안내(국토교통부), 2016년 국민기초생활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교육부) 준용

붙임 : 부정수급자 고발 관련 유선 질의 결과 1부. 끝.